

# 부 산 가 정 법 원

## 제 1 부

## 판 결

사 건 2012드합○○○○○ 이혼등

원 고 김AA

피 고 최BB

변 론 종 결 2014. 5. 22.

판 결 선 고 2014. 6.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10 지분 및 별

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68년 만나 같은 해 5.경부터 동거하다가 1970. 3.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이 된 딸 김CC(19 . . .생)을 두었다.

#### 나. 원고의 외도 및 가정소홀

원고는 1988년경부터 4~5년간 사교춤을 배우며 카바레를 출입하였고 일주일에 2회 이상 술을 마시고 늦은 귀가를 하거나 외박을 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으며 다른 여성과 수차례 부정행위를 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원고는 1989. 11. 24.자로 피고 앞으로 '원고는 사교와 춤으로나 타사유로 가정의 불화를 초래할 시에는 이유불문하고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1976년 경 출장차 여인숙에 묵었다가 여인숙에서 일하던 여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여인숙 여자가 임신하였다고 하자 그녀에게 여인숙을 얻어줘야 한다며 피고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며, 2005~2006년경 이DD와 잠자리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여 피고와 크게 싸운 후 2005. 9.경 피고 앞으로 '원고는 향후 다른 여자(이DD, 차EE) 및 그 외의 모든 여자와 불륜관계로 만나거나 전화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이전등기해줄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 다. 상습폭력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잘못된 일이거나 사소한 일로도 트집을 잡으며 피고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고 특히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다. 일례로 원고는 ① 1976년경 여인숙 여자의 일로 피고에게 돈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거절하자 발과 주먹으로 피고를 폭행하였고, ② 2006. 12. 10. 주먹과 몽둥이로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건 및 눈주위좌상,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③ 2008. 5. 5.경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친목회 회원들과 같이 울릉도로 2박 3일 여행을 하고 온 일로 피고와 다투다가 피고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대퇴부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④ 2009. 4. 19.경 남동생의 집에서 피고를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렸으며, ⑤ 2010. 10. 17. 만기가 도래한 우리투자증권 파생상품의 처리 및 미래에셋증권 펀드를 환매하는 문제로 피고와 다투다가 피고의 목살을 잡아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고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는데 그 일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버000호로 40시간의 수감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한 불안 및 두려움으로 2004. 9. 10.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2008. 2.경 및 2010. 10.경 가정폭력피해에 관한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 라. 별거 등

1) 원고는 피고와 울릉도 여행 사건으로 다툼 2008. 5.경부터 그동안 피고가 관리해온 원고의 연금통장(원고의 퇴직연금이 지급되던 통장)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에게 별도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화가 급격히 줄어들어 등 관계가 냉각되었다.

2) 피고는 위 다. ⑤항 기재 폭행사건으로 집을 나와 그로부터 거주지를 숨긴 채 원고와 별거하고 있다.

3) 원고는 2012. 4. 4.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음주 및 폭력습벽이 개선된다면 집에 들어가 원고와 함께 살 의사가 있다며 이혼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6, 제2호증, 제4, 5~10호증, 제12, 13호증의 각 1, 2, 제14호증, 제15호증의 1~4, 제16호증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의 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로 이유 없이 원고에게 짜증을 내고 인격적으로 원고를 무시하는 등 홀대하였고 2010. 10. 17. 부부싸움을 한 이후 집을 나가 일체 연락을 두절하고 거주지를 숨긴 채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고 부당하게 대우한 피고의 잘못으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각 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000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2010. 10.경 이후로 현재까지 3년 8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는 점, 피

고는 원고의 음주 및 폭력습벽이 개선되는 것을 조건으로만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다고 하고, 원고는 단지 피고와의 이혼을 원할 뿐 현재의 생활습관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거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일응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혼인기간 동안 사고춤에 빠져 수차례 외도를 하는 등 가정애 소홀하고, 자신의 잘못이나 사소한 일로도 피고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로 하여금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한 원고의 잘못이, 원고를 피하여 집을 나간 후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잘못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3.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희

판사        백소영

판사        조수진

## 1. 목 록

- 가. 부산 ○○구 FF동 ●●●-● 외 36필지 조표 ●-● 제○○○호 철근콘크리트조 스퀘어형 평가건점포시장 및 사무실 1동 건평 705평4홉 중 2층평 16평7홉 옥상평 32평 지하실평 334평3홉 내 구분의 ○○호 건평 2평
- 나. 부산 ○○구 FF동 ●●●-● 외 36필지 조표 ●-● 제○○○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점포시장 및 사무실 1층 2,331.91m<sup>2</sup> 중 2층 55.21m<sup>2</sup> 옥상 105.79m<sup>2</sup> 지하실 1,105.13m<sup>2</sup> 구분의 ○○호 1층 6.61m<sup>2</sup>
- 다. 부산 ○○구 FF동 ●●●-● 외 36필지 조표 ●-● 제○○○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점포시장 및 사무실 1층 2,331.91m<sup>2</sup> 중 2층 55.21m<sup>2</sup> 옥상 105.79m<sup>2</sup> 지하실 1,105.13m<sup>2</sup> 구분의 ○○호 1층 6.61m<sup>2</sup>. 끝.

## 2. 목 록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구 GG동 ●●-● HH●●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공동주택  
81.18m<sup>2</sup>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가. 부산 ○○구 GG동 ●●-● 대 4,568m<sup>2</sup>

나. 부산 ○○구 GG동 ●●-● 대 3,595m<sup>2</sup>

다. 부산 ○○구 GG동 ●●-● 대 239m<sup>2</sup>

라. 부산 ○○구 GG동 ●●-● 대 1,131m<sup>2</sup>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호 시멘트 블록조 40.59m<sup>2</sup>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68,800분의 10,381

2. 소유권대지권 359,500분의 8,170

3. 소유권대지권 23,900분의 543

4. 소유권대지권 113,100분의 2,572

나. 울산 ○○군 ●면 ●●리 ●●-● 답 1,622m<sup>2</sup>

다. 같은 리 ●●-● 답 1,881m<sup>2</sup>

라. 부산 ○○구 ●●동 ●-● 조표 제●●호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  
70.76m<sup>2</sup>

마. 부산 ○○구 ●●동 ●-● 대 165m<sup>2</sup>. 끝.